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 모든 정의와는 노획은 전쟁 조작과 폭정에 대한 원인의
거부의 의의를 차지하는 바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하는 미국 국가대통령과
그리고 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 모든 정의와는 전부하면서 조선에서 평화통일 도모
비전과 함께 하여 왔다.

전쟁 조건에서 계기되는 가장 친구하고 친자적인 문제는 전 조선 지역으로부터 이 시기 외국군의
각하과 경계를 공고한 것과 예로 기관사기고 남북조선의 군현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조선 내의 예로
기의 간 경계상대를 확장하여 조선 자체의 자립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확립되도록 자기 조국을 확장
하는 행위로 통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이 정당한 과업은 신현하기 위하여
서는 무었보다도 조선에서 경제개발을 방지하고 공고한 평화유지를 국제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새 전쟁준비를 위한 미국측의 부당한 조치에
의하여 초래된 현하의 난관들이 반드시 계거되어야 하며 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퇴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관국가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국제
회의가 조속히 소집되어야 할 필요성을 재강조하면서 조선이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남북
조선간의 경제, 문화적 교류 및 기타 접촉과 협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오늘 미국측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거할 대신에 오히려 유엔군사령부를 서울로 끌어오며
정전협정을 파괴하고 신형무기를 남조선으로 반입하려는 책동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 미국 지배
층은 어떠한 도발적 행동으로써도 조선인민을 결코 놀래울 수는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측이 조선에서 새 전쟁을 준비할 목적으로 남조선으로 신
형무기를 자유롭게 반입하기 위하여 정전협정 제13항 2목의 준수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려는 부당한
책동을 결정적으로 반대 배격한다. 어떤 경우에도 정전협정의 일방적 수정 또는 폐기는 있을 수 없
다. 만일 미국측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남조선으로 신형무기를 반입하는 행동을 감행한다면 그로
부터 초래되는 모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1957년 6월 26일

평양시

〈제네바協約加入과 關聯한 聲明〉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네바협약들에

가입함에 관한 남일 외무상 성명— (57. 8. 22)

베른

서서 현방 정치부장

막스·프티피에르 각하

존경하는 부장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1957년 8월 21일 다음 협약을 1949년 8월 12일부 전투장에서의 병상자들의 대우를 개선할 때 대관 한 제네바 협약; 해상에 있는 병력 성원중 병상자 및 조난당한 자들의 대우를 개선할 때 관한 제네바협약;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및 전시에 있어서의 자민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다음 사항들을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다. 는 것을 당신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1949년 8월 12일부 전투장에서의 병상자들의 대우를 개선할 때 관한 제네바협약 제10조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병상자 또는 의료성원을 억류한 국가가 중립국 혹은 인도주의 단체에 대하여 보호국이 응당 집행하여야 할 임무들을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피보호자의 소속 본국 정부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이를 합법적인 요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1949년 8월 12일부 해상에 있는 병력 성원중 병사자 및 조난당한 자들의 대우를 개선할 때 관한 제네바협약 제10조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병상자, 조난당한 자 또는 의료성원들을 억류한 국가가 중립국 혹은 인도주의적 단체에 대하여 보호국이 응당 집행하여야 할 임무들을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피보호자의 소속 본국 정부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이를 합법적인 요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1949년 8월 12일부 전쟁 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0조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전쟁포로를 억류한 국가가 전쟁포로들을 본 협약의 다른 체약국들에 이송하여 관리케 하는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전쟁포로에 대하여 본 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본래와 억류국으로서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동 협약 제12조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전쟁포로를 억류한 국가가 전쟁포로들을 본 협약의 다른 체약국들에 이송하여 관리케 하는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전쟁포로에 대하여 본 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본래와 억류국으로서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동 협약 제85조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뉴른베르그 및 동경 극동국제군사법정의 원칙들에 근거한 전쟁 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감행한 죄책으로 인하여 전쟁포로 억류국의 법령으로 판결을 선고 받은 전쟁포로의 대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4) 1949년 8월 12일부 전시에 있어서의 사민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본 협약이 적 점령지역 외의 사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도주의적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본 협약이 점령지역 및 기타 일련의 경우에 사민의 리익을 보호한다는 궁극적 면을 고려하여 이에 가입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보류한다.

동 협약 제11조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피보호자들을 억류한 국가가 중립국 또는 인도주의적 단체에 대하여 보호국이 응당 집행하여야 할 임무들을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피보호자의

소속 본국 정부로
동 협약 제45조
《조선민주주의
국들에 이송하여
할 본래의 억류
나의 본 서한
로 간주하여 주
동시에 나는 그
상술한 협약이
주실것을 당신에
부장 각하!
나는 당신에게

조선에서 정전
약 군대는 계속
미국 군인들으
에로 신형 무기으
반복 감행되고
1957년 1월 1
쏘아 참살하였느
속 미군 1명은
총을 란사하여
1957년 4월에
승 격방시켰다.
1957년 4월 5
여 점포와 민간
하였다.

수는 그 정부를 놀라게 했고, 대체 그 의도를 알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이 자신을 안장하게 하는 그 동지의 제45조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피보호자를 억류한 국가가 피보호자를 압수·악의 다른 제3국들에 이송하여 관리케 하는 기간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피보호자에 대하여 본 협약은 적용하여야 할 본래의 억류국으로서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나의 본색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사술한 협약들에 가입함을 확인하는 공식문서이
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가입을 서서 현방 정부에 통보하여 주심과 아울러 상술한 협약이 서명국 및 가입국들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가입하였다는 것을 통보하여 주실것을 당신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장 각하!

나는 당신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상　남　　외

1957년 8월 22일

380

〈美軍蠻行과 關聯한 聲明〉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상 서명— (57. 10. 9)

조선에서 정전 협정이 체결되고 정전이 실현된지 이미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이제 침략 군대는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만행을 봄다의 자제하고 있다.

미국 군인들의 만행은 금년도에 들어 서면서 특히 「유엔군 사령부」를 서울로 끌어 들이며 남조선에로 신형 무기의 도입을 위하여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파괴하면 시기를 전후로하여 더욱 잔인하게 반복 간행되고 있다.

1957년 1월 14일 인천시 반석동 67번지에서 미군 현병 2명은 리춘옥의 딸인 방배(16세)를 총으로 쏘아 참살하였으며 1957년 3월 11일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덕천리에서 미군 제24사단 48야포대 소속 미군 1명은 린근 개울에서 빨래하는 리 애들이와 최순희를 강간하려다가 그들이 도망하게 되자 총을 란사하여 리애들이를 참살하였다.

1957년 4월에 경기도 파주 및 양주를 중심한 미군의 가축한 만행은 전체 조선인민의 분노를 더한
줄 격박시켰다.

1957년 4월 5일 파주군 연풍리에 주둔한 민군 제24사단 한병대는 총동원하여 연풍리 일대의 1백여 점포와 민간의 주택을 불법 수색하고 현금 7만환과 시가 약 1천여만환에 해당하는 물품을 강탈하였다.